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03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891,4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4,416,3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260,430원(가산세 포함) 및 재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5,096,810원, 지역자원시설세 173,680원, 지방교육세 999,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9. 자동자부품 제조업 및 도장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3. [redacted]시 B 공장용지 2,428㎡, C 답 140㎡ 합계 2,568㎡ 및 각 지상 건물 1,321.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가액 2,125,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85,000,000원, 지방교육세 8,500,000원, 농어촌특별세 4,250,000원 합계 97,7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기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4. 4. 11.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임을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97,750,000원 및 환급이자 2,994,880원 합계 100,744,880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346.22㎡을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하여 취득가액 543,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4. 4. 8. 이 사건 증축부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개정 전후로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15,204,000원, 농어촌특별세 3,040,800원을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 확장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 6. 5.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의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증축 부분 및 가설 건축물 48㎡(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174,995,980원, 지방교육세 14,416,370원, 농어촌특별세 8,260,430원 합계 197,672,780원(별지2 목록 기재 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5,096,810원, 지역자원시설세 173,680원, 지방교육세 999,110원 합계 6,269,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13. 위 라항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12. 10. 위 라항의 처분 중, ①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4의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2, 4의 무신고 가산세 부분 20,040,800원(= 17,000,000원 + 3,040,800원)은 원고가 산출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감면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②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 5의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3, 5의 무신고 가산세 부분 147,550원(= 85,000원 + 62,550원)은 원고가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과소신고 가산세율(10%)을 적용한 73,775원(= 42,500원 + 31,275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위 2020. 12. 10.자 결정에 따라 일부 취소 및 감액경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설립은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존 회사(소외 회사)의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의 추가라고 볼 수 없는 실질적 창업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법 제6조 제1, 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감면 대상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제121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위 각 규정상의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4 내지 17, 20, 21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설립은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기존 회사인 소외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 개시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은 생산, 고용 등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제조업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해 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설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설립경위, 기존 회사의 사업과 신설 회사의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동일성 여부, 신설 회사의 규모, 실태 및 구체적인 거래 현황,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매입처 및 매출처의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소외 회사는 1967. 4. 2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자동차엔진용부품'이고,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공장의 업종은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외 1종(분류번호 30310, 30400)'이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2. 19. 자동자부품 제조업 및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의 사업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자동차부품'이고,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공장의 업종은 '자동차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외 1종(분류번호 30310, 30400)'이다. 원고가 주로 터보차량의 엔진부품을, 소외 회사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오일펌프부품을 주로 생산한다거나, 소외 회사의 공장의 업종이 공장등록증명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분류번호는 30110)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에 있어서 원고와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 사업인 '자동차엔진 또는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E이고, 소외 회사의 주식 보유비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연말 기준 주식회사 F 15.26%(최대주주), 재단법인 G 9.88%, E 5.11%로 합계 30.25%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말 기준 보유지분 비율도 이와 대동소이한데, 소외 회사의 주주 중 주식회사 F의 지분은 2014년 기준 E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 소유하였고, 재단법인 G(E의 부친이자 H회사의 전 사장인 망 I이 설립하였다)의 지분은 E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E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라고 볼 수 있다.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도적인 관여로 설립된 원고의 대표이사 또한 E으로 동일하고, 원고의 감사는 E의 처 J이며, E과 J은 원고의 지분을 100% 소유한 지배주주이다. 이처럼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의 구성은 E 및 특수관계인인 점에서 동일하다.

④ 소외 회사는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속 중간 관리자 및 실무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직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후 정상 운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되자 이를 해체하였으나, 위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원이던 K 차장, L 과장, M 대리, N 사원은 원고로 소속을 변경한 뒤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의 기능직 직원 18명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개시하였으나, 그 후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0개월 간 동안 소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급여 및 소위 4대 보험료를 지급받았으며, 2014. 8. 1.경 원고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원고로 소속을 변경한 소외 회사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원과 위 기능직 직원들은 원고 소속 전체 직원의 78%에 이른다.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의 각 표준재무제표 중 표준손익계산서의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에 의하면 2014년 6,180,300원의 급여가 지출된 것 외에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의 2014년 2, 4, 8, 12월, 2015년 1, 12월 각 급여대장 및 2016년도 연차수당 지급 품의서(2018. 2. 7.자)의 결재자란에는 원고 직원이 아닌 소외 회사 직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바,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설립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측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가 지출한 원고의 설립 및 경영지원에 따른 제반 비용을 원고의 부채로 회계처리하거나 소외 회사에 이를 상환한 바는 없다.

이처럼 소외 회사는 원고를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설립 이후 원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등 원고의 경영에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며(E이 원고 설립 시 개인자금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⑤ 원고의 설립 이후 총매출액은 2014 사업연도 1,637,000,000원, 2015 사업연도 2,747,000,000원, 2016 사업연도 2,538,000,000원, 2017 사업연도 3,317,000,000원이고, 그중 소외 회사에 대한 자동차부품 등 납품거래로 인한 매출액은 2014 사업연도 1,630,000,000원, 2015 사업연도 2,580,000,000원, 2016 사업연도 2,381,000,000원, 2017 사업연도 3,250,000,000원으로, 위 사업연도 기간 총매출액 중 소외 회사와 거래로 인한 매출이 각각 무려 99.55%, 93.94%, 93.83%, 97.97%를 차지하는 등 원고의 총매출액 거의 대부분이 소외 회사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매출액 역시 자동차부품 등 생산 과정에서 남은 고철 따위를 매각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의 사실상 유일한 거래처였다.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및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차입금거래는 은행과의 대출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단법인 G, 주식회사 F, E 및 그 친족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 버스차량을 임차하여 원고의 통근버스로 이용하면서 소외 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위와 같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운영사업의 유사성 내지 관련성, 원고의 설립 경위 및 소외 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대한 관여 정도,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의 구성 및 관계,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의 공유 내지 승계 현황,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 현황, 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설립은,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설립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사업을 자동차터보엔진부품 제조업 등으로 확장하거나 일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불과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독자적·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은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 또는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닌바,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별지1

목록

(단위 : 원)

번호	과세대상 ([redacted]시)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①	가설건축물 창업감면분 추정	868,290	798,450	-	69,840
②	[redacted] 외 1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분 추정	167,212,420	147,619,500	13,061,950	6,530,970
③	[redacted] 외 1 토지, 건물 취득세 과소신고분 추정	836,040	738,090	65,300	32,650
④	[redacted] 건물 증축 창업감면분 추정	27,987,960	25,145,890	1,263,140	1,578,930
⑤	[redacted] 건물 증축 과소신고 추정	575,760	517,300	25,980	32,480
⑥	컨테이너 무신고 추정	192,310	176,750	-	15,560
		197,672,780	174,995,980	14,416,370	8,260,4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별지2

목록

(단위 : 원)

번호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무신고(20%)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
①	318,290	100,000	198,450	-	19,840
②	69,462,420	17,000,000	45,619,500	4,561,950	2,280,970
③	347,290	85,000	228,090	22,800	11,400
④	10,829,160	3,040,800	6,901,090	394,340	492,930
⑤	222,770	62,550	141,970	8,110	10,140
⑥	76,370	21,080	50,270	-	5,020
합계	81,256,300	20,309,430	53,139,370	4,987,200	2,820,3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별지3

목록

(단위 : 원)

구분 ([redacted]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redacted] 외 1 (건물분)	555,510	551,350	667,880	650,570	2,425,310
[redacted] (토지분)	903,300	948,380	978,970	1,013,640	3,844,290
합 계	1,458,810	1,499,730	1,646,850	1,664,210	6,269,6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별지4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1]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위 '직접 사용' 부분은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로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후로 차이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6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끝.